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5- 호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·해제 고시

「산림보호법」 제45조의 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·해제 고시합니다.

2015년 1월 2일

서대문구청장

1. 공시명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·해제 고시
2. 지정 및 해제 사유
 - 지정사유 :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
 - 해제사유 : 사방사업 완료에 따른 지정 목적 달성
3. 고시일 : 2015. 1. 2.
4. 대상지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산1-98 등 44개소
5.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: 붙임2와 같음
8. 지정·해제 대상지 소재와 면적 및 구역 도면 : 붙임1과 같음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푸른도시과(☎02-330-873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산사태취약지역 지정·해제대상지 내역서 각1부
2. 산사태취약지역 행위 제한 사항 1부. 끝.